

우편번호 : 31529

상세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154(배미동)

홈페이지 : <http://www.asanfmc.or.kr>

전화번호 : 041-536-4252

<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제재 등 조치 이행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회수센터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

- 공 고 명 :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회수센터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
- 개찰일시 : 2026. 7. 23.(목) 11:00
- 수요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공고번호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90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및 발주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팀 이진은 주임(☎ 041-538-1973)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정성진 주임(☎ 041-536-4252)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7.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규정
9.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유 의 사 항 >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회수센터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만·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건 명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회수센터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 적격심사 / 단가입찰	예정수량	· 폐매트리스 : 7,422개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금18,000원(단가)	사업금액	금133,596,000원(부가세포함)
과업기간	착수일 ~ 2026. 12. 31.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동계약 허용여부	허용안함
입찰기간	접수개시일: 2026. 7. 15.(수) 공고 시 제출마감일: 2026. 7. 23.(목) 10:00	개찰일시	2026. 7. 23.(목) 11:00
개찰장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계약담당자 PC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발주사항 관련문의	자원회수팀 이진은 (☎ 041-538-1973)	계약집행 관련문의	회계팀 정성진 (☎ 041-536-4252)
유의사항	▶ 투찰은 <u>기초금액(부가세 포함) 단가</u>로 투찰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과업지시서 및 물품 규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초금액 및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1 입찰(개찰)일시 : 2026. 7. 23.(목) 11:00
- 2.2 입찰(개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2.3 입찰(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4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7. 15.(수) 공고 시
- 2.5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7. 23.(목) 10:00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3. 입찰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 3.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입찰입니다.
- 3.2 **제한경쟁, 적격심사 실시, 청렴계약** 입니다.
- 3.3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요건은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입찰참가등록업체
- 4.3. **업종코드(1143, 1257, 1388, 6786, 6770, 6778)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춘 업체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 |
|--------------------------------|------------------------------------|
| ■ 1143 : 폐기물종합처분업 | ■ 1257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
| ■ 1388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4.4. 주영업점의 소재지가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인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5. 제출방법

- 5.1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5.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5.3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4 본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 기기의 장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5.5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5.6 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바랍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최대빈도수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6.2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 지방계약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7.1 본 계약건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모든 입찰에 필요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 평가기준 : 85점 이상시 적격판정**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별표3)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기준	배 점	비 고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간 동등이상 용역 실적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금액: 121,450,909원 (별표3-1)	10	발주부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별표6	10	계약부서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별표3-2	9	발주부서
		기술 보유상황	별표3-2	1	발주부서
	신인도	-	별표7	-	계약부서
	소 계			30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4.245%	70	
합 계(해당용역수행능력+입찰가격)				100	
결격사유				△20	감점지표

* 이행실적 : 동등이상용역만 평가하고,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음. (*폐매트리스 위탁처리용역)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종합평점 =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7.3 동일가격 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8.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자가 다수 항목 해당하는 경우 가장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 무효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는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10.1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용)」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3] 참고**

- 10.2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준수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업체는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참고**
- 1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첨부4] 참고**
- ※ 낙찰자 등급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 보완 시 계약 불가**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 12.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2.2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5] 참고**
- ※ 상생결제 약정은행**
-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12.3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12.4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 유의사항

- 13.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나라장터 운영규정 및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외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3.2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정부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오류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3.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13.4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합니다.
- (*단 제조납품 사실이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음)
- 13.5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감시관(☎ 041-536-4211) 혹은 공단 홈페이지(www.asanfmc.or.kr) [시민공간] → [클린신고센터]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및 발주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팀 이진은 주임(☎ 041-538-1973)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정성진 주임(☎ 041-536-4252)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I.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은 7년)간 동등 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7	1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 신 인 도		+4.75~△8.0	+4.75~△8.0
	소계		37	30
II. 지역 업체 참여도		지역 업체 참여비율	3	-
I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V.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 2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낙찰하한을 80.49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평점(점) = 배점한도 - 4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낙찰하한을 84.24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A. 30%이상 : 3

B. 30%미만 ~ 20%이상 : 1

※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가하거나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에**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가점수 (배점한도)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창업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17	1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B. 70%이상~100%미만	15	9	
		C. 40%이상~70%미만	13	8	
		D. 10%이상~40%미만	11	7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6	3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B. 70%이상~100%미만	4	2	
		C. 40%이상~70%미만	2	1	
		D. 10%이상~40%미만	1	0.5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서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3-2]

기 술 능 력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9	9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0	0
나. 기술보유 상 황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지정·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EEC 및 GR)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환경설비 품질인증,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 물 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 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 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 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의 사본 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 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 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	25	1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5.0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9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7	24.7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7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5	24.5	9.6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3	24.3	9.5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2)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1)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1.0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 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 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1.25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0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자 2.0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율(3.1%)이상인 기업 1.25	
D. 신규채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 7% 이상인 기업 3.0 6%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 중기업 : 8% 이상인 기업 3.0 7%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11% 이상인 기업 3.0 9%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에 한함) (1)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가)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나)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다)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2)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 이상 1.25	



심 사 항 목	평점(점)
F.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3)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4)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5)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6)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5 1.0 0.5 1.0 0.5 1.0
G.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자) (2)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자)	1.0 2.0
H.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0.5
I. 중소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서비스)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소기업.소상공인	1.5 1.0
J.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3)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4)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2.0 2.0 2.0
K.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L.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0.5
M. 정규직 전환 이행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N.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부요구)의 종결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연배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심 사 항 목	평점(점)
O.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3.0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2.0
(3)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1.0
P. 하도급법 위반정도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서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2)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Q.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2)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R.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S. 산업안전	
(1) 산업재해발생 :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 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	△3.0
(2) 안전보건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I. 신인도 평가 총괄

-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N(납품지연), P(불공정거래), Q(부정당업자제제)"항목만 적용한다.
- 신인도 각 심사항목(A~S)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F. 공동수급체 구성 (1), (2)와 심사항목 I. 중소기업 지원 (2)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고용인원 (율)평가 공통기준
 - 고용인원 계산결과와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 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및 급여 지급 확인서류에 따른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

는다.

라.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적용례) 4월 입찰공고건으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 고용율)' 과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평가할 때, 평가기간내에 동일인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1인이 고용되어 있는 경우

[1단계] 가장 높은 평점 심사항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선정

- 각 심사항목 동일인물을 포함하여 각각 평가 : 장애인고용율은 3.9%로 1.25점, 평균 여성고용률 5.9%와 평균 여성종업원 6인으로 0.75점

구분	1월	2월	3월	1차 평가	
				평가등급	평점
총 고용인원	100	102	103		
장애인 고용인원	3	4	5	3.9%	1.25점
여성 고용인원	5	6	7	5.9%, 6인	0.75점

[2단계] 가장 높은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 '여성고용 우수기업'항 평가

- 동일인물을 월별 총고용인원에 포함하고 여성고용인원에서 제외 → 4.918%, 5인으로 평점 없음

구분	1월	2월	3월	2차 평가	
				평가등급	평점
총 고용인원	100	102	103		
장애인 고용인원	3	4	5	3.9%	1.25점
여성 고용인원	4	5	6	4.918%, 5인	0점

[3단계] 최종평점은 1.25점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25점, 여성고용 우수기업 0점

5.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자료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II.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A(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해당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text{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여성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2. "C(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해당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다. 중복평가

1)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3. "D(신규채용 우수기업)"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

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 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 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D(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E(청년고용 우수기업)"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종업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종업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

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29세 이하 적용 기준(2014년도 공고시) = 2014-14 = 2000, 2014-28=1986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0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F(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

가.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한 입찰공고에 한하여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공동수급체(단,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도 포함)에 평점을 부여한다.

- 1) "(1)", "(2)"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이 공동수급체에 참가(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소기업·소상공인 참가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1)", "(2)"는 1)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3) "(3)", "(4)"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가(10%이상)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에 평가하고,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 "(4)"를 부여한다.
- 4) "(3)", "(4)"는 4)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5) "(1) ~ (6)"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가장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 6)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3절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6. "G(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항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7. "H(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항 평가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 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8. "I(중소기업)"항 평가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2)”에 대해서 평가하지 아니한다.

9. “J(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항 평가

가. 관련 주무부(처, 청)(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1)”, “(2)”, “(3)”, “(4)”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10. “K(고령자친화기업)”항 평가

가. 보건복지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1. “M(정규직 전환 이행)”항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여,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12. “N(납품지연)”항 평가

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나.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13. “O(부적정처리가능성)”항 평가

가.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14. “P(하도급법 위반정도)”항 평가

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

다.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15. “Q(고용노동 관련법 위반)”항 평가

가. “(1)”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2)”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16. "R(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7. "S(산업안전)"항 평가

가. “(1)”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고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 중(낙찰자 결정일 기준)인 자료로 평가한다.

※ 자료 조회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연 1회)
-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반기별, 공표기간 1년)

나. “(2)”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한다.